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0
----------	-----

제출년월일 : 2001. 5. 2.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 (안 제8조제3항제1호).

생활보호법이 국민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함.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하고“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소관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81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박철순
	폐기물관리담당	박재진
	담당자	이명수